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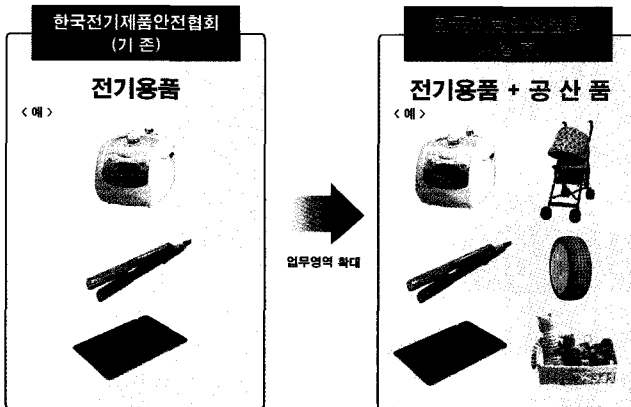
『제품안전기본법』이 2011년 2월 5일 부터 시행됩니다!

제품안전기본법 요약

- ◎ 제품안전 전담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 설립
- ◎ 위해제품의 수거·파기 등, 리콜제도 시행
- ◎ 제품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,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 의무 규정
- ◎ 시중 유통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조사 실시
- ◎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, 운영

한국제품안전협회 설립 (법 제21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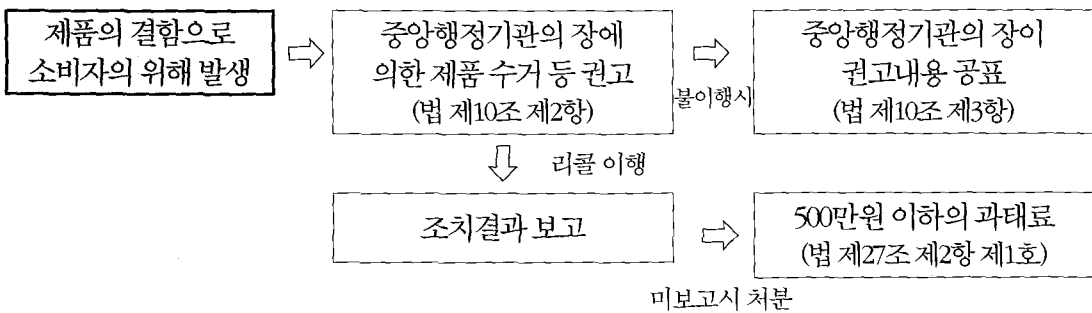
- 기존 전기용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전 공산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롭게 출범시켜 명실공히 제품안전 전담기관으로 육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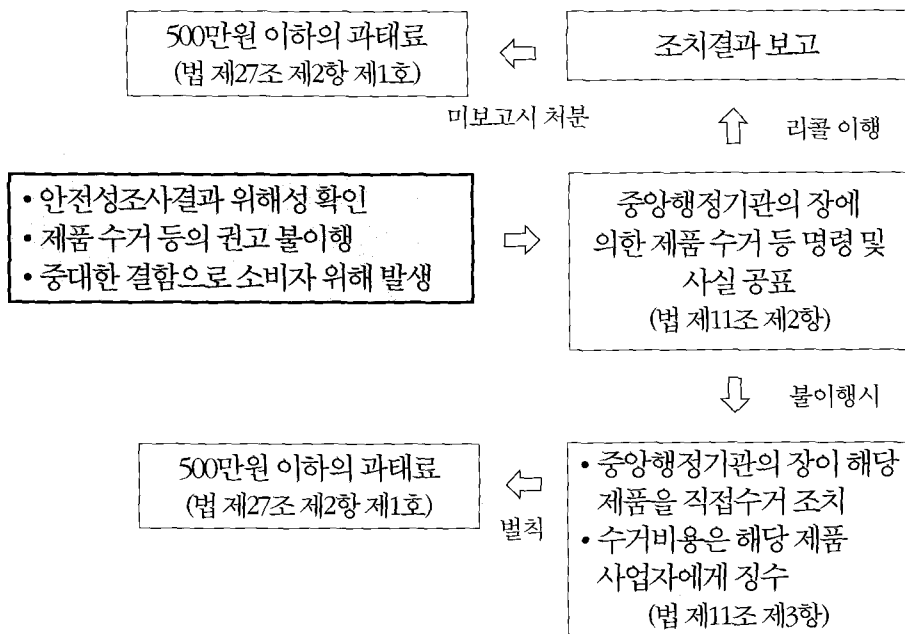
위해제품의 수거·폐기 등 리콜제도 시행 (법 제10조, 제11조)

- 경미한 위해사항은 리콜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일 경우에는 리콜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
- 사업자는 제품생산 시 안전한 제품의 공급에 힘써야 하고,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리콜을 실시 한다는 자세가 중요

CASE 1 제품수거 등의 권고: 리콜권고 (법 제 10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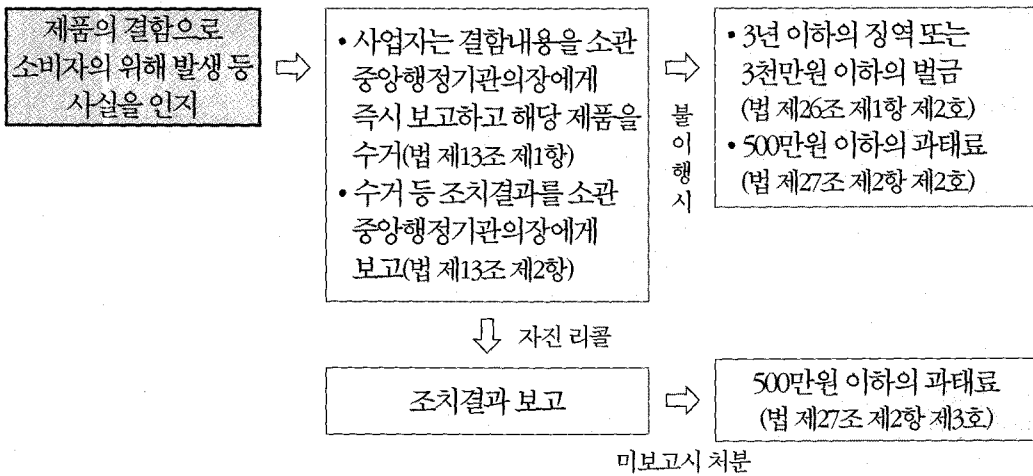
CASE 2 제품수거 등의 명령: 리콜명령 (법 제 11조)



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안전조치 의무화 (법 제13조)

-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, 결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해당 제품의 수거 등 조치를 의무화
- 사업자가 자진리콜을 실시할 경우, 강제적 리콜명령이나 벌칙 등은 면제

CASE 3 사업자의 제품 자진수거: 자발적 안전조치 (법 제 13조)



※ 리콜이란?

⇒ 소비생활용 제품에 의한 사고의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제조·수입·판매 사업자가 실시하는 수거, 파기, 수리, 교환, 환급, 개선조치, 제조·유통금지 등 대응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“리콜(Recall)” 이라고 함

리콜의 종류

- * 리콜권고 :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, 정부가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 수거 등을 권고하는 조치
- * 리콜명령 : 중대한 제품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, 정부가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조치

강화된 안전성 조사 (법 제9조)

- 시중에 유통되는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
- 안전성 조사를 한 경우,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며,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

제품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, 운영 (법 제15조)

- 제품사고조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사고조사센터로 지정

제품안전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(법 제18조)

-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개발자금 출연근거 마련
 -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의 제품안전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제품안전 기반 확충 추진
 - ※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실적: ('09) 50억원 → ('10)38억원 / 전담기관: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
- 제품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강화
 - 사업자, 근로자,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율안전관리 분위기 조성
- 제품안전정보망 구축·운영 활성화
 - 안전성조사결과, 리콜정보 등 소비자 안전에 필요한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·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

※ 문의

-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
 - 주 소: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-12, 마리오타워 310호
 - 연락처: Tel. 02-890-8300 / Fax, 02-890-8309
 - Homepage : www.ekesa.or.kr

